

제 호

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서

1. 기관명:
2. 대표자:
3. 소재지:
4. 조 건:

「의료기기법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

